

방한용, 패션용, 스포츠용 마스크 신설 고시

국가기술표준원 (2021. 10. 26)



국가기술표준원은 방한용, 패션용, 스포츠용 마스크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
으로 신규 지정하여 10월 26일 부로 신설고시하였다.

- 개정 취지
- 외기로부터 얼굴과 목의 피부, 입이나 코 등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방한용, 패션용 및 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
- 개정 내용
-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7 (방한용,패션용,스포츠용 마스크) 신설 및 이에 따른 부속서17 안전기준 제정
- 적용 범위
- 외기로부터 얼굴과 목의 피부, 입이나 코 등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섬유, 합성수지, 가죽 또는 모피 재질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 (일회용 마스크를 포함)을 의미함
 - 단, 식품의약품안전처 「약사법」 및 고용노동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타법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: ex-KF94, KF80 마스크 등)
- 시행일자 : 2021년 12월 22일



■ 유해물질 안전요건

유해물질명		기준치
폼알데하이드 ¹⁾		75 mg/kg 이하
아릴아민 ²⁾		각각 30 mg/kg 이하
pH ¹⁾		4.0 ~ 7.5
형광증백제 ¹⁾		형광이 나타나지 말 것
유기주석화합물(TBT, Tributyltin) ³⁾		1.0 mg/kg 이하
알러지성 염료 ⁴⁾		각각 50 mg/kg 이하
다이메틸푸마레이트 ⁵⁾		0.1 mg/kg 이하
유해원소 함유량	총 납 ⁶⁾	100 mg/kg 이하
	총 카드뮴 ⁶⁾	75 mg/kg 이하
프탈레이트계 가소제 ⁶⁾	DEHP	총 합 0.1 % 이하
	DBP	
	BBP	
디메틸포름아미드(DMF) ⁸⁾		5 mg/kg 이하
디메틸아세트아미드(DMAc) ⁸⁾		5 mg/kg 이하

- 주 1. 섬유(부직포 포함) 재질에 한하여 적용한다.
2. 염색한 섬유(부직포 포함)부분에만 적용하며, 대상물질은 KS K 0147, KS K 0739에 따른다.
3. 섬유(부직포 포함)원단 및 가죽재질에 코팅, 프린팅 등이 되어있는 경우만 적용한다.
4. 대상물질은 KS K 0736에 따르고, 적용되는 조성섬유는 폴리에스터, 나일론, 아크릴, 아세테이트, 트리아세테이트, 염화비닐 섬유이며, 염색한 섬유(부직포 포함)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.
5. 가죽과 모피 소재에 적용한다.
6. 금속 기질, 고분자 기질, 페인팅 및 유사코팅, 기타 재료(목재 등)부분에 적용하며, 섬유(부직포 포함)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 총 납의 경우 페인팅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/kg 이하로 적용한다.
7. 섬유 원단에 합성수지(합성고무 포함) 소재로 코팅 또는 프린팅 등의 가공처리를 한 경우 및 합성수지(합성고무 포함) 소재의 부자재에만 적용하며, 대상물질은 DEHP [Di-(2-ethylhexyl) phthalate,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(CAS No. 117-81-7)], DBP[Dibutyl phthalate, 디부틸프탈레이트(CAS No. 84-74-2)], BBP[Benzyl butyl Phthalate, 벤질부틸프탈레이트(CAS No. 85-68-7)]이다. 단, 금속 및 고분자 기질 위에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8. 부직포 및 폴리우레탄 등으로 구성된 안감, 중간층, 겉감에 대해 제조과정 중에 유기용제를 사용한 경우 적용한다.

■ 안전요건 관련 적합여부 확인

-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한 생활용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유해물질이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시험 또는 제3자 시험·검사기관, 외국의 시험성적서, 원자재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

■ 표시사항

-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아래 사항을 한글로 표시
- 표시사항 상단의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」문구는 표시할 것을 권장
- 다만, 취급상 주의사항은 포장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 가능

1. 품명

- 방한용, 패션용 및 스포츠용 마스크 중 해당되는 제품으로 표기함 (예: 방한용 마스크)

2. 재질의 종류

- 사용한 재질은 안감, 중간층, 겉감 등으로 구분하고, 부직포의 경우 제조방법(예시 : 스펀본드, 멜트브로운, 전기방사 등)도 표기함
- 재질에 대한 표시는 섬유류의 경우 [가정용 섬유제품] 부속서, 가죽 및 모피의 경우 [가죽제품]
- 부속서, 합성수지의 경우 [합성수지제품] 부속서 상 표시사항을 따름

[예시] 세부 표시방법

[A.1] 재질 종류별 표시방법(예시)

종류	표시 방법	비고
섬유	• (겉감) 폴리에스터 95%, 폴리우레탄 5% • (중간층) 폴리프로필렌 100% • (안감) 면 80%, 레이온 20%	혼용률을 알지 못할 경우 조성만을 표시할 수 있음
	비고) 부직포의 경우 제조방법을 표기하여야 함 • (겉감) 폴리에틸렌 100%(스펀본드) • (중간층) 폴리프로필렌 100%(멜트 블로운) • (안감) 폴리아미드 100%(전기방사)	
합성수지	• (겉감) 폴리아미드(PA) • (중간층) 폴리프로필렌(PP) • (안감) 폴리에틸렌(PE)	-
가죽 또는 천연모피	• (겉감) 천연모피(밍크) • (중간층) 인조가죽 • (안감) 천연가죽(양가죽)	-

3.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(수입품에 한함)
4. 제조국명
5. 제조연월
 - 제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함(제조연월, 최초 판매시즌, 로트번호 등)
6. 치수
 -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함
 - [예시] 치수 표시 방법 : 「식품의약품안전처」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스크를 펼친 후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세로로 접어 가장 긴 길이인 코편 위의 꼭지점부터 턱 부분 꼭지점까지 측정하여 아래와 같이 치수를 표시할 수 있음

구분	세로길이
특대형	171 mm 이상
대형	150 ~ 170 mm
중형	136 ~ 149 mm
소형	135 mm 이하

7.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
 - 표시자는 제품하자 및 리콜에 대해 책임을 지는 ‘제품 문의처’, ‘소비자상담실’, ‘제조자명(국산품에 한함)’, ‘수입자명(수입품에 한함)’ 또는 ‘판매자명’으로 표시할 수 있음
8. 사용상 주의사항(포장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 가능)
 - ① 부직포가 사용된 제품은 세탁하여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.
 - ② 이 제품은 황사, 미세먼지, 비말,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- ③ 이 제품에 방향제, 탈취제, 살균제를 처리하거나 또는 직접 뿌리는(덧붙이는 패치 등 포함) 경우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